

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7. 9. 12

나. 회부일자 : '97. 9. 12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운영의 효율화 및
-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회계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4. 주요골자

- 특별회계 적용범위를 재산관리, 세입·세출·예산의 편성 및 집행으로 함(안제2조)
- 회계의 관리·운영자를 대학의 학장으로 함(안제3조)
- 세입과 세출기준을 정함(안제4~5조)
- 지방채 및 일시차입을 할수 있도록 정함(안제6조)
-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받을수 있도록 함(안제7조)
- 수업료 등 결정 및 면제규정을 둠(안제9~11조)
-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제12~13조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학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검토한바, 이는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

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첫째 특별회계 적용범위를 재산관리, 세입·세출, 예산의 편성 및 집행으로 하고(안제2조)

둘째 회계의 관리, 운용자를 대학의 학장으로 하며(안제3조)

셋째 세입·세출의 기준을 정하며(안제4,5조)

넷째 지방채 및 일시차입을 할수 있도록 하며(안제6조)

다섯째 입학금의 결정에 있어 학장의 요구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토록 하고 기타 회계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